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68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양부남 · 강준현 · 김문수
김영환 · 김현정 · 박균택
박수현 · 박정현 · 이강일
이광희 · 이성윤 · 정준호
정진욱 · 조계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전통시장 골목길, 학교 앞 이면도로와 같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설치된 긴급단추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된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개

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특별시장등이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행안전 등 시설점검) ① 특별시장등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은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등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 또는 관계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보행안전 등 시설점검)</u> ① <u>특별시장등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u> ② <u>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은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등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 또는 관계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u>